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7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 다. 상 정 일 자 : 1998. 10. 28(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 시행('98. 1. 1)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이유제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종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진술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개정하여 이번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하며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